

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사유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괴정4동은 현재 송곡, 괴정4동 경로당 2개소만 있어 타동에 비해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
- 2003년 동순방 구정설명회시 주민건의사항으로 채택되어 노인들의 건전여가 선용을 위한 장소로 경로당을 매입코자 함
- 매입대상 재산현황
 - ▷ 취득구분 : 건물, 토지
 - ▷ 위 치 : 괴정4동 1130 - 14
 - ▷ 건물매입(예정)연면적 : 49.49m'(15평) ▷ 지상 1층
 - ▷ 토지매입(예정)연면적 : 229m' (69평)
 - ▷ 매입예상금액 : 183,200천원 (토지, 건물 포함)

3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
-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
4. 검토의견

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, 2004년도 예산편성전의 당해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취득목적이 주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될 뿐 아니라 이미 주민건의사항으로 인지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승인함이 옳다고 생각됨.

2003. 10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